

#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

발의자 : 오승철 의원

제출일 : 2024. 2. .

## 1. 제안이유

-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, 창업공간 및 재정지원,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1조)
-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 13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이 악화되고,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전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※ 【참고】 「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」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**19세 이상 39세 이하인**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※ 【참고】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2. “창업”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.